

『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9년 11월 20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9년 11월 20일

라. 상정일자 : 2009년 12월 18일

제14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선산출장소장 이 춘 배

나. 제안이유

-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개정 및 인근 휴양림과 형평성을 고려한 주차료 면제조항 신설,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약금 처리 기준 변경, 산불예방 기간동안 행위 금지조항 추가, 숲속의 집 증축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주차료 면제조항 신설(안 제6조)
- 상위법 개정으로 관련법 명칭변경 및 위약금·배상처리 기준변경
(안 제7조, 안 제8조, 별표2, 별표3 신설)
 - 「소비자피해보상규정」→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
- 산불예방 기간동안 취사행위 금지조항 추가(안 제11조)
- 숲속의 집 증축에 따른 시설사용료 징수대상 추가
(안 제4조, 별표1)
- 숲속의 집 증축에 따른 시설사용료 면제대상 추가
(안 제6조, 별표1)
- 숲속의 집 증축에 따른 시설사용료 반환대상 추가
(안 제7조 제8조, 별표1)

라. 참고사항

-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17조
- 「소비자기본법」 제16조 및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7조
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3조
-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0조
- 「5·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59조
-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
- 「공직선거법」 제2조,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제22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성 근

○ 본 개정 조례안은

-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근 휴양림과 형평성을 고려한 주차료 면제조항 신설, 위약금 처리기준 변경 행위 금지조항 추가, 숲속의 집 증축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조정하고자 마련된 조례안 임

○ 주요 내용은

- 주차료 면제조항 신설(안 제6조)
-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법 명칭변경과 위약금·배상처리 기준변경(안 제7조, 안 제8조, 별표2, 별표3 신설)
 - 「소비자피해보상규정」 →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
- 산불예방 기간동안 행위 금지조항 추가(안 제11조)
- 숲속의 집 증축에 따른 시설사용료 징수대상, 면제대상, 반환 대상 추가[별표1]

○ 검토 결과

-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6조 규정에 의거 시설사용료 중 주차장 면제조항을 신설하고 증축된 숲속의 집 시설사용료를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으로
- 인근 휴양림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차장 면제대상자를 추가 신설 함으로서 민원해소 및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숲속의 집 시설확장에 따라 시설사용료 대상을 추가, 위약금·배상처리 기준 명시로 휴양림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